

●산림청고시 제2023-55호

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)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(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), 제27조(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)에 따라,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23년 07월 11일

산림청장

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

1. 지정요건 및 자격

○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중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6조 및 「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」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

2. 선정결과

|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지정 학교 | 책임수행자 | 지원기간 |
| 국민대학교 | 이창배 교수 | 2023.7~2027.12 |